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63
----------	------

2025년 2월 2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5일
- 다. 상정일자: 제3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2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

-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제326회 임시회 당시,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해 20억원 출자 동의를 기 완료하였으나 펀드 운용 형태(모태펀드 연계→시 주도), 출자 규모 (20억→10억)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변경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출자 변경 개요
 - 출자규모: 10억원

- (기존) 20억원 → (변경) 10억원

※ 제326회 임시회 20억원 출자 동의 완료

○ 조성목표: 15억원 출자

- (기존) 200억원 → (변경) 15억원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 민간 출자자 → 서울시(10억원), 민간 출자자

2) 출자 필요성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 기술 보유기업 육성 필요함.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 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함.
- 일반기업 투자비율을 줄이고, 기후테크 기업 투자 집중 및 자금 지원 외 초기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 도입 필요함.

3) 기후테크 펀드 출자 계획

○ 추진 방향

-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육성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펀드 운영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미래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 집중 육성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운용사를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 출자금액: 10억원

- 출자 재원: 기후대응기금

○ 기후테크 펀드 조성 계획

- 펀드 명: 기후테크 펀드

- 조성목표: 15억원

▸ 서울시(10억원), 민간 출자자

○ 조성형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등

-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원 이하 기업에 펀드 총 결성액의 70% 투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2025년도 기금 예산 반영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 규모 및 시 출자 규모 축소, 운용 형태 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¹⁾에 따라 출자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서울시는 2011년 이후 ‘녹색기업 창업펀드’(이하 “녹색 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해 왔으며, 금번 7회차부터는 ‘기후테크 펀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억원(시 출자액 20억원 포함) 규모로 조성, 모태펀드와 연계하여 운용할 계획에 따라 관련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어 제32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음.
- 그러나 출자 동의안 가결 이후 현 모태펀드 연계방식의 운용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외에 일반기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고 펀드 운용 관리에 제한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기후테크 펀드 개선 추진 계획(‘25.1.21.)’이 수립된 바 있음.

2) 출자 변경 동의안 타당성 검토

-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2025년 기후테크 펀드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펀드 조성 규모를 15억원(10억원 시 출자+5억원 민간투자)으로 축소하고 전문 운용사를 선정, 시 주도로 펀드를 운용하여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제출되었음.
- 세부적으로 기존 모태펀드와 연계한 운용방식은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녹색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포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고 있는바,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시 주도 펀드로 전환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하고 펀드 운용 관리를 강화하는 형태로 펀드 운용 방향을 재설정하였음.

실제 기존 펀드의 경우 녹색기업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22%, 26%)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시 주도의 펀드 운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당초 펀드 조성 목적에 맞게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펀드 운용 형태 변경 내용 및 장단점〉

구 분	기존 계획안	변경 계획안
내 용	모태펀드 연계(규모 200억원)	시 주도 펀드(규모 15억원)
장 점	펀드 조성 규모 확대로 운용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 용이	시 정책(녹색기업 투자) 집중 추진 용이
단 점	시 정책 단독 추진 곤란(펀드 조성액 중 녹색기업 투자 22% 수준에 불과)	펀드 조성 규모 축소로 운용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 곤란

- 다만, 펀드 조성 규모를 당초 20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펀드의 기업당 평균 투자액이 약 8억원임을 고려한다면 실제 2개 업체 정도에 투자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후테크 산업 분야 확산 및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2463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나.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하여 기 출자동의(제326회 임시회) 받은 모태펀드 연계방식의 운용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외 일반기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고, 펀드 운용 관리에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시 주도 펀드로 운용형태를 변경하고, 출자규모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 변경개요

○ 출자규모 : 10억원

- (기존) 20억원 → (변경) 10억원

○ 조성목표 : 15억원

- (기존) 200억원 → (변경) 15억원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 민간출자자 → 서울시(10억원), 민간출자자

나. 필 요 성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보유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 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
- 일반기업 투자비율을 줄이고, 기후테크 기업 투자 집중 및 자금 지원 외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 도입 필요

3. 기후테크 펀드 출자 계획

가. 추진방향

-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육성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펀드 운영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미래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 집중 육성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운용사를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나. 출자금액 : 10억원

- 출자재원 : 기후대응기금

다. 기후테크 펀드 조성 계획

- 펀 드 명 : 기후테크 펀드
- 조성목표 : 15억원
 - 서울시(10억원), 민간출자자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등
 -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원 이하 기업에 펀드 총 결성액의 70% 투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복혜진 (☎ 2133-3586)